

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(대표발의 : 김석규 의원)

의안 번호	1
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발 의 자 : 김석규·최선희·공유신
최순희 의원(4명)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-229(2025.12.8.)호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함으로써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심사위 구성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 의무화(안 제4조)
- 나.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외국정부 공식초청, 국제회의 참석, 자매결연 체결 등만 허용(안 제11조제2항)
- 다. 의장의 허가 검토서 누리집 공개 절차 신설(안 제11조제3항)
- 라. 모든 징계·환수 처분의원에 대해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(안 제11조제4항)
- 마. 위법·부당한 출장 판단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·조사 의뢰 의무화 (안 제12조제5항)
- 바.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및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 부담 강요 금지 등 직원 보호 강화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및 표준안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 중 “따라 의원”을 “따른 양산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 중 “주민”을 “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”으로, “구성되도록 하여야”를 “구성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“양산시의회”를 “양산시의회(이하 ‘의회’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“위원회의 직능”을 “심사위원회의 직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하며”를 “하며 휴일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소속”을 “의회 소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지체 없”을 “지체 없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제2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(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)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의회 누리집,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회부하고,”를 “회부하고, 의회”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(제8조 관련)

항목	심사기준	예	아니오
출장의 필요성	1.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?		
	2.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?		
	3.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?		
	4.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?		
지방의정과외의 관련성	1.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?		
	2.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?		
	3.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?		
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	1.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?		
	2.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?		
	3.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?		
	4.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?		
	5.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?		
	6.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?		
출장자의 적합성	1.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?		
	2. 출장자 중 징계·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?		
	3.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?		
	4.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?		
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	1.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?		
	2. 방문국의 관습, 공휴일 등을 감안,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?		
	3.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?		
출장경비의 적정성	1.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?		
	2.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?		
	3.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?		
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	1.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?		
	2.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?		

※ '아니오'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범위) <u>이 규칙이 적용하는 양산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3조(허가권자)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<u>따라</u> <u>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 · 법조계 · 언론계 ·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<u>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</u>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<u>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허가권자) ----- ----- <u>따른 양산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</u>----- --.</p> 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</u>----- ---- <u>구성하여야</u> 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

1. ~ 3. (생략)

4. 양산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

⑤ ~ ⑧ (생략)

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직능,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
제7조(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) ① (생략)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회의) ① ~ ④ (생략)

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양산시의회(이하 '의회'라 한다) -----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 -----
심사위원회의 직능-----

-----.

제7조(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하
며 휴일 등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회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 의회 소속 -----

-----.

⑥ -----

----- 지체 없-----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12조(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)

① ~ ④ (생 략)

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(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)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의회 누리집,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 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사후관리 등) (생 략)

<신 설>

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12조(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사후관리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(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)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의회

제15조(징계현황의 공개 등) ①
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
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징계대
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
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
고,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「지
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징계사유
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
요구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누리집,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
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
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
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징계현황의 공개 등) ① -

----- 회부하
고, 의회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
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
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
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
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
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
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
는 아니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
직원에게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
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
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
여서는 아니된다.

현 행

개 정 안

[별표]

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(제8조 관련)

항목	심사기준	예	아니오
출장의 필요성	1.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?		
	2.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?		
	3.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?		
지방의정과의 관련성 (국제교류, 초청 목적출장 제외)	1.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?		
	2.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?		
	3.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?		
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	1.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?		
	2.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?		
	3.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?		
	4.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?		
	5.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?		
	6.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?		
출장자의 적합성	1.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?		
	2.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?		
	3.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?		
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	1.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?		
	2. 방문국의 관습, 공휴일 등을 감안,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?		
	3.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?		
출장경비의 적정성	1.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?		
	2.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?		
	3.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?		
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	1.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?		
	2.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?		

※ ‘아니오’ 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

[별표]

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(제8조 관련)

항목	심사기준	예	아니오
출장의 필요성	1.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?		
	2.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?		
	3.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?		
	4.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?		
지방의정과의 관련성	1.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?		
	2.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?		
	3.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?		
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	1.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?		
	2.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?		
	3.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?		
	4.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?		
	5.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?		
	6.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?		
출장자의 적합성	1.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?		
	2. 출장자 중 징계·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?		
	3.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?		
	4.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?		
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	1.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?		
	2. 방문국의 관습, 공휴일 등을 감안,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?		
	3.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?		
출장경비의 적정성	1.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?		
	2.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?		
	3.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?		
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	1.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?		
	2.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?		

※ ‘아니오’ 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